

필 적 감 정 신 청

사 건 2000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감정대상

피고의 시필(試筆)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"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 임 야 소유주 ◇◇◇, 476㎡"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

- 2. 감정인 및 감정기일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피고의 시필 채취

피 고 ◇◇◇의 시필을 채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제출법원	수소법원	제출부수	선청서 1부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신청기간	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289조).		
검 증 의 의 의	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,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.		
감 정 의 대 상	・법규 : 외국법규, 관습 ・사실판단 : 교통사고원인, 노동능력의 상실정도, 필적・인영의 동일성, 토지・가옥의 임대료, 공사비, 혈액형,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		
기타	 ·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. 다만,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(민사소송법 제336조). · 매도인이 서증인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다투면서 그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의 필적은 매도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인데도 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도 없이 선뜻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판단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것임(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 다26935 판결). · 시중에서 인장, 명함, 인재도매 등의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 하여 필적감정에 관한 특별지식이 없다 할 수 없고,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만이 필적의 동일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66. 1. 31. 선고 65다2540 판결). 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